

# 필기전형

#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 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 증명서(원본)	-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 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 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	장애인 증명서(원본)	-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 증명서(원본)	
시각 장애	공 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 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 증명서(원본)	-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 증명서(원본), 의사 진단서(원본)	기존 1~2급
		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 진단서(원본)	기존 3급 2호
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 증명서(원본), 의사 진단서(원본)	기존 4급 2호
		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장애인 증명서(원본)	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4,5급 1호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장애인 증명서(원본), 의사 진단서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눈 시력 0.3이하
	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5급 2호, 6급
	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장애인 증명서(원본)	기존 2~6급
기타	임신부	· 시험 중 화장실 이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(원본)	-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	의사 진단서(원본)	-	

#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

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유형별 필기전형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증빙서류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응시자에 한해 필기전형 편의지원 제공

## 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의료법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의료정보 - 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확인 가능하며,
- 반드시 위에 안내된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전문의의 진단서를 발급(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(날인)기재)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**불인정**
- 단,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함

## 2. 발급일자 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분(원본)

\* 진단서 발급일 : 2022.4.22.일 이후 발급

※ 단, 임신부 및 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은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

\* 진단서 발급일 : 2024.4.8.일 이후 발급

## 3.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- ④ 발급한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(날인)

### <진단서 발급 예시>

장애유형	정 도	예 시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상기인은 <b>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</b> 자이며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<b>0.3이하에</b> 해당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필기시험 응시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.

※ 입사지원서 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의함